

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
- ②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- ③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
- ④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

제 3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- ④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4 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(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의결한다.

제 6 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,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으로 한다.

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8 조(수당과 여비지급)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“부산직할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9 조(자료제출의 요구 등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의 비공개)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